

『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3월 2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3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4월 3일

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건물노후화(35년) 및 안전진단결과(2004년 C등급), 안전문제발생 등이 우려되어 현 비둘기아파트를 매각하고
- 2014년 2월 공무원아파트 분양매입으로 관리계획안이 기 승인되었으나 교리2지구 공동주택 매입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공무원아파트 취득 방식을 분양매입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처분재산】

☐ 비둘기(공무원)아파트 매각

- 위 치 : 구미시 형곡동 65번지
- 대 상 : 토지 10,917㎡(3,302평), 건물 6,094㎡(1,844평)
- 세 대 수 : 100세대(19평형 10세대, 17평형 90세대)

- 준 공 : 1979. 3월
- 예정가격 : 10,300,000천원(가감정액)
- ※ 토지 92억원, 건물 11억원

【취득재산】

<당 초>

□ 공무원아파트 매입

- 위 치 : 선산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1B-1L
- 대 상 : 아파트 100세대(전용면적 85㎡이하, 구 34평이하)
- 기준가격 : 20,076,615천원(분양가 기준)

<변 경>

□ 공무원아파트 신축

- 위 치 : 선산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28B 내
- 면 적 : 48,901㎡
 - 환지청산금 155억원중 80억원 지급
 - 차액 75억원은 부지 매각 대금으로 지급
- 대 상 : 아파트 100세대 (전용면적 60㎡이하, 구 25평이하)
- 기준가격 : 14,200,000천원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동법 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제141회(2009. 4월) 임시회 시 공무원아파트 매각, 신축으로 승인

- 제184회(2014. 2월) 임시회 시 공무원아파트 분양매입으로 기 변경 승인되었으나
- 2014. 10월 아파트분양사(대림)의 통보에 따라 교리2지구 공동 주택 매입의무가 소멸되어 공무원아파트 취득 방식을 분양매입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관리계획안은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건물 노후화(35년) 및 안전진단결과(2004년도 C등급),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고 매각 미추진시 흉물 및 슬럼화가 우려 되며, 인근 형곡2주공 재건축 추진 등 관내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현 시점이 공유재산 매각 적기라 판단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